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

가.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023-192호, 2023. 10. 25.)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제2항)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 제1호(기존 공개대상 항목)로 규정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23. 10. 25.)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1부. 끝.

